의안번호	2125375
의 뢰 인	김진표 의원
회 답 일	2024. 1. 5.
추계번호	23A4775

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)	제14조에 따른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의 장(이하 “지원처장”이라 한다)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성·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14조(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)	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(이하 “지원처”라 한다)를 둠(제1항)	의무규정
3	안 제15조(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)	첨단연구산업의 육성 및 보호,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·개발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를 둠(제1항) 1.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2. 첨단연구산업의 육성·보호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.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·지정·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첨단연구산업의 육성 및 보호,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·개발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4	안 제16조(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·개발 및 운영 지원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·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함(제1항) 1.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(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)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2. 그 밖에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·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5	안 제18조(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개발을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·「관세법」·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·소득세·관세·취득세·등록면허세·농어촌특별세·재산세·교육세 및 종합부동산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(제1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·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, 「농지법」, 「초지법」 및 「산지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(제2항)	
6	안 제19조(외국인투자기업등의 경영활동 지원)	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(이하 "외국인투자기업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,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, 의료시설・교육시설・연구시설・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1.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 2.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	재량규정
7	안 제21조(외국교육기관의 설립·운영 등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연구산업단지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,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(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)	제1호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
2	안 제14조(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15조(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)	제1호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4	안 제16조(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·개발 및 운영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5	안 제18조(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)	
6	안 제19조(외국인투자기업등의 경영활동 지원)	
7	안 제21조(외국교육기관의 설립·운영 등)	

2. 상세 사유

가.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(안 제6조)

❑ 안 제6조에 따라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의 장이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❑ 유사사례 등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으로 추정되어 동 재정수반요인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에 해당함

○ 유사사례로는 「수산업 경제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」(인천 옹진, 2023년, 1억 7,000만원), 「첨단기술융합 바이오신약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」(경북 포항, 2023년, 1억원), 「항공부품 거점단지 및 MRO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」(경북, 2022년, 2억 5,000만원) 등[1)]

나.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(안 제14조)

❑ 안 제14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를 둘 경우 신규 채용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1) 기본계획 수립 관련 유사사례는 조달청의 조달공고 홈페이지(나라장터)에서 검색한 결과로서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임

○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는 「정부조직법」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며(제2항), 정무직인 처장 및 차장 각 1명을 둠(제3항)

❑ 다만, 제정안은 동 지원처의 조직·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(제4항) 구체적인 인력 소요 및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다.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(안 제15조)

❑ 안 제15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를 둘 경우 회의경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동 위원회는 위원장(국무총리)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(제2항)

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유사 위원회의 회의경비 등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으로 추정되어 동 재정수반요인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에 해당함

○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부위원회 중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다음과 같음

-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경우 2024년 관련 예산은 1억 6,000만원으로 편성됨(“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등 운영 지원”)

[표 1]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 정부위원회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위원회 (소속)	근거법	위원 수	예산집행 ('23.10.)
수소경제위원회 (국무총리)	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	20명	200
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(국무총리)	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	20명	—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의 「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부위원회 현황」(2023. 10.)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라.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·개발 및 운영 지원(안 제16조), 외국인투자기업등의 경영활동 지원(안 제19조) 등

❑ 안 제16조, 안 제19조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·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,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며, 외국인투자기업등의 경영활동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
○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·개발 및 운영에 대한 주요 지원 내용은 "첨단연구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(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)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" 등임(안 제16조제1항제1호)

○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한 지원 내용은 "임대할 부지의 조성,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, 의료시설・교육시설・연구시설・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" 등임(안 제19조제1항)

○ 외국교육기관의 설립·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연구산업단지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,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음(안 제21조제4항)

❑ 다만, 제정안에 따른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·개발 및 운영 등은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과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통해 확정되므로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○ 참고로, 제정안에 따르면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6조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봄(안 제8조제3항)

- 2022년 8월 4일에 시행된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근거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재정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근거한 주요 재정사업 현황(예시)

(단위: 백만원)

재정사업	회계·기금	2024년 예산
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반조성	일반회계	1,608
-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보호 기반 사업	일반회계	358
-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확충	일반회계	200
-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	일반회계	1,050
배터리 아카데미 구축	일반회계	5,710
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 지원사업(R&D)	일반회계	4,500
-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술개발지원	일반회계	2,700
-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지원	일반회계	900
-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력양성지원	일반회계	900
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	일반회계	15,406
울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	일반회계	3,750
구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	일반회계	20,000
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	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	90,000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의 「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(Ⅱ-1)」(2023. 8.) 및 「2024년도 예산」(2023. 12.)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※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개요

1. 개 요

❑ (추진배경) 첨단산업의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내 첨단산업 생산 및 혁신 거점으로 '글로벌 산업 클러스터' 마련 필요

*첨단산업 역량은 국가산업 경쟁력 및 경제 성장의 근간이자 국가의 안보 자산

❑ (추진경과) 제1차 첨단위 특화단지 추진계획 의결('22.11) → 특화단지 공모('22.12~'23.2) → 특화단지 선정 전문위원회* 평가('23.3~7)

*정부 3명(산업·기재·국토부), 민간 7명(정책·지역·기술 전문가 등)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여, 지자체 PT 발표 등을 포함한 총 7차례 회의를 통해 검토 및 평가 진행

2. 특화단지 지정안

❑ (공모 결과) 반도체·디스플레이·이차전지에서 총 21개 수요 접수

반도체(15건)	디스플레이(1건)	이차전지(5건)
경기*(8), 인천(1), 충북(1), 대전(1), 전남·광주(1), 경남(1), 경북(1), 부산(1) * 용인, 평택, 이천, 화성, 남양주, 안성 등	충남(1)	충북(1), 경북*(2), 울산(1), 전북(1) * 포항, 상주

❑ (평가 기준) 「첨단전략산업 특별법」 상 특화단지 지정 취지에 따라,

○ ❶첨단전략기술 보유 선도기업 유무, ❷선도기업 및 관련 기업의 신규 투자, ❸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, ❹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

❑ (지정안) 총 7개 특화단지 : 반도체(2)·디스플레이(1)·이차전지(4)

△ 반도체 : 용인·평택(메모리·시스템 반도체), 구미(반도체 소재)
△ 디스플레이 : 충남(차세대 디스플레이)
△ 이차전지 : 충북(배터리 셀), 포항(양극재), 새만금(원료), 울산(셀, 소재)

※ 소부장 특화단지 : 안성(반도체)·부산(반도체)·광주(미래차)·대구(미래차)·충북(바이오) 등 5개 지정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, 「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(Ⅱ-1)」, 2023. 8.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